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 연월일 | 2023. . . (제 회)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제 출 자 | 국무위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제출 연월일 | 2023.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9395호, 2023. 4. 18., 일부개정)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결성 주체 및 등록 요건, 투자 의무 및 행위제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록·운용 요건 구체화 (안 제34조제2항·제3항·제4항, 제39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 1) 소형 모펀드의 난립 방지를 위해 출자금 총액을 1,000억원 이상, 분할 출자 시 최초 출자금액은 200억원으로 명시
-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처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가능한 집합투자업자의 요건을 납입자본금 20억원 이상,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으로 설정
- 3)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의 출자 1좌 금액, 유한 책임조합원 수,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존속기간 등 요건 제시
- 4)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해산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합을 계속하기 위해 신고서 제출 시 변경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5)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장부·서류검사 사유에 포함
- 6)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록·변경등록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한 일부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위임 근거 마련
- 7)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록·변경등록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업무 일부의 한국벤처투자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위탁 근거 마련
- 8)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록 사무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포함 자료 처리 근거 마련

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및 행위제한 완화 (안 제35조제4항·제6항, 제37조의2제2호·제3호)

- 1) 수익성 중심의 자율적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상장 법인 보유제한비율 완화,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 허용
- 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의무 비율을 출자금 총액의 60%로 명시
- 3) 운용 편의를 위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자펀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 운용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

다.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관련 창업기획자·벤처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운용 규정 정비 (안 제13조제5항, 제15조제2항, 제20조, 제24조, 제34조제1항, 제35조제5항, 제37조의2제1호)

- 1) 창업기획자가 결성가능한 벤처투자조합의 범위를 법 제50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명확화
-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기업 투자비중 산정 대상에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 제외
- 3) 자펀드 출자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
- 4) 동일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영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상장 법인 투자비중, 창업·벤처기업 투자비중 산정대상에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제외

라. 개인전문투자자 및 유한(책임)회사 전문인력의 경력 인정 범위 등 입법 미비사항 해소 (안 제4조,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33조)

- 1)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 중 인정 경력에 창업기획자 경력을 포함
-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법률 제18861호, 2021.12.28., 전부개정)에 따라 ‘초기창업자’ 명칭을 ‘초기창업기업’으로 일괄 변경
- 3)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전문인력의 인정 경력에 창업기획자,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에서의 경력을 포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5. 26. ~ 7. 1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나목1)부터 6)까지를 각각 2)부터 7)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창업기획자

제13조제4항제1호아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초기창업자”를 “초기창업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초기창업자를”을 “초기창업기업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법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벤처투자조합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자 선발방법)”을 “(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 선발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초기창업자”를 “초기창업기업”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나목 중 “벤처투자조합을”을 “벤처투자조합(법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벤처투자조합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초기창업자에 대한”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으로, “초기창업자에 대하여”를 “초기창업기업에 대하여”로 한다.

제20조 단서 중 “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법 제50조에 따라 등록

한 벤처투자조합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제33조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제4조제2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을 각각 “제4조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라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벤처투자조합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한다.

제34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0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출자금액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법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납입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일 것
2. 제23조제7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④ 법 제63조의2제2항에서 “조합원의 범위,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2.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일 것. 이 경우 유한책임조합원의 수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2항에 따른 자(같은 영 제10조제3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에서 제외할 것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10퍼센트 미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하고,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를 각각 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할 것.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한다.
 - 다. 모태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에서 제외할 것
 - 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금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하고, 10퍼센트 이상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를 각각 유한책임조

합원 1인으로 산정할 것

3.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4.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제3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경우에는 40퍼센트를 말한다.

제35조제5항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⑥ 법 제6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예외) 법 제63조의2제5항에 따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해 달리 정하는 투자비율 및 행위 제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5조제3항의 비율을 산정할 때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은 제외한다.
2. 제36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또는 제36조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있다.
3. 제36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민간재간접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30퍼센트 이내를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은 각 벤처투자조합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제39조제3항 중 “후단”을 “후단 또는 제63조의2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47조제3항제5호 중 “법 제50조제1항”을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제63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4호 중 “법 제50조”를 “법 제50조 또는 제63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37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을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37조제2항제4호 및 제50조제1항제5호·제6호”를 “제37조제2항제4호, 제50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63조의2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법 제50조”를 “법 제50조 및 제63조의2”로 한다.

제49조제5호 중 “법 제50조”를 “법 제50조 및 제63조의2”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 위반행위란 가목 중 “후단 또는 제50조제1항”을 “후단, 제50조제1항 후단 또는 제63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위반행위란 나목 중 “후단 또는 제50조제1항”을 “후단, 제50조제1항 후단 또는 제63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4조(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법 제9조제2항에서 “투자실적, 경력 및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p> <p>1. (생략)</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p> <p> 가. (생략)</p> <p>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했거나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u><신 설></u></p> <p> <u>1) ~ 6)</u> (생략)</p> <p> 다. ~ 마. (생략)</p> <p>제13조(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p> <p> ① ~ ③ (생략)</p> <p> ④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p> | <p>제4조(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 가. (현행과 같음)</p> <p> 나. -----</p> <p>-----</p> <p>-----</p> <p>-----</p> <p>-----</p> <p>-----</p> <p>-----</p> <p> <u>1) 창업기획자</u></p> <p> <u>2) ~ 7)</u> (현행 1)부터 6)까지와 같음)</p> <p> 다. ~ 마. (현행과 같음)</p> <p>제13조(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p> <p> ① ~ ③ (현행과 같음)</p> <p> ④ -----</p> <p>-----</p> <p>-----.</p>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다만, 법 제37조 제2항제2호사목 또는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 또는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등록말소일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가. ~ 사. (생략)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기관에서 초기창업자 선발 및 투자, 창업보육 등 창업기획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 4) (생략)

자. 차. (생략)

2. 초기창업자를 위한 보육공간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무실을 갖출 것

⑤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1. -----

-----.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

초기창업기업 -----

1) ~ 4) (현행과 같음)

자. 차. (현행과 같음)

2. 초기창업기업을 -----

⑤ ----- 벤처투자조합(법 제50조에 따라 등록된 벤처투자조합으로 한정한다. 이하

두 갖추어야 한다.

1. 2. (생략)

제14조(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자 선발방법) 창업기획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초기창업자 중 지원대상자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선발기준 및 선발절차를 마련하여 선발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선발을 조건으로 불리한 거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창업기획자의 투자 의무)

① (생략)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전체 투자금액은 다음 각 목의 투자금액의 합계로 산정할 것. 다만, 창업기획자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생략)

나.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

이 항에서 같다)-----

1. 2. (현행과 같음)

제14조(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 선발방법) -----

----- 초기창업기업 -----

제15조(창업기획자의 투자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한 경우에는 그 개인
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
합의 투자금액에 창업기획
자의 출자비율을 곱한 금
액

2.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금액
은 투자 당시 증권시장에 상
장되지 않은 초기창업자에 대
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
으로 산정할 것

③ (생략)

제20조(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이란 자본잠식률(자본총
계가 납입자본금에 미치지 못하
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퍼센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다만,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
고 하거나 결성한 창업기획자의
경우에는 50퍼센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제2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① (생략)

----- 벤처투자조합(법
제50조에 따라 등록된 벤
처투자조합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

-

2.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

----- 초기창업기업에 대
하여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

--- 벤처투자조합(법 제50조에
따라 등록된 벤처투자조합으로
한정한다)-----

제2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금액 또는 자본금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 금액의 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제외할 것

가. ~ 라. (생략)

<신설>

4. (생략)

제33조(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요건)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4. (현행과 같음)

제33조(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요건) -----

-----.

1. (현행과 같음)

2. -----

가. 제4조제2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과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나. 제4조제2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3. (생략)

제34조(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법 제50조제2항에서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2. (생략)

3.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일 것. 이 경우 유한책임조합원의 수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 다. (생략)

라.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

가. 제4조제2호나목-----

나. 제4조제2호나목-----

3. (현행과 같음)

제34조(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신 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납입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일 것

2. 제23조제7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④ 법 제63조의2제2항에서 “조합원의 범위,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2.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일 것. 이 경우 유한책임조합원의 수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71조의 14제2항에 따른 자(같은 영 제10조제3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에서 제외할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10퍼센트 미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하고,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를 각각 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할 것.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 모태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에서 제외할 것

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금 총액의 10퍼

투자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것
가. ~ 다. (생략)

<신설>

4. ~ 6. (생략)

<신설>

<신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의 출자금액

4. ~ 6. (현행과 같음)

⑥ 법 제63조의2제4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
0퍼센트를 말한다.

제37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
합에 대한 예외) 법 제63조의2
제5항에 따라 민간재간접벤처
투자조합에 대해 달리 정하는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 등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제35조제3항의 비율을 산정
할 때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
합의 출자금액은 제외한다.

2. 제36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신
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제36
조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있다.

3. 제36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

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30퍼센트 이내를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은 각 벤처투자조합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제39조(벤처투자조합의 해산)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생략)

제47조(보고와 검사) ①·② (생략)

③ 법 제7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생략)

5.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중요 사항 변경등록 여

제39조(벤처투자조합의 해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후단 또는 제63조의2제1항 후단-----.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보고와 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제63조의2제1항 -----

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중소기업부장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략)
4. 법 제50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변경등록
5. (생략)

② 중소기업부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벤처투자에 위탁한다.

1. 삭제
2. 법 제9조, 제12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37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의 관리
3. ~ 5. (생략)
6. 법 제24조제2항제4호, 제37조제2항제4호 및 제50조제1항제5호·제6호에 따른 전문인력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50조 또는 제63조의2-----
5. (현행과 같음)

② -----

2. -----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1항-----
3. ~ 5. (현행과 같음)
6. ----- 제37조제2항제4호, 제50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63조의2제1항

과 시설에 관한 자료의 관리

7. ~ 12. (생략)

③ (생략)

④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 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위탁한다.

1. ~ 5. (생략)

6. 법 제50조에 따른 벤처투자 조합의 등록·변경등록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7.·8. (생략)

⑤·⑥ (생략)

제4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기업부장관(법 제76조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호-----

7. ~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50조 및 제63조의2-----

7.·8.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4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
|--|---|
| <p>1. ~ 4. (생략)</p> <p>5. <u>법 제50조</u>에 따른 벤처투자 조합의 등록에 관한 사무</p> | <p>1. ~ 4. (현행과 같음)</p> <p>5. <u>법 제50조 및 제63조의2</u>----- -----</p> |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 |
| 연 락 처 | (044) 204 - 7711 |